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서

(파생상품거래용)

본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약정서(이하“약정서”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 ] (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년           월           일에 체결한 [ ]의 부속서류로서 담보약정서이며,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제 1 조 (약정의목적)

본 약정서의 체결 목적은 고객이 기본계약서에 따라 은행과 개별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에 증거담보의 제공없이 체결할 수 있는 파생상품거래의 손실한도를 정하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 2 조 (약정의적용)

본 약정서는 고객과 은행 간에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개별 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고, 본 약정서의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하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됩니다. 본 약정서를 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고객과 은행간에 적용할 다른 담보 관련약정서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서는 본 약정서의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약정서는 해당 약정서를 대신하여 해당 파생상품거래에 적용됩니다.

배제되는 거래 및 담보약정:

## 제 3 조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이라 함은 기본계약서에 의해 고객과 은행간에 체결되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순평가손실금액을 말합니다. 단, 본 약정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거래확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별 파생상품거래는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②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이하 “손실한도”라 한다)는 고객이 은행과 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이 일정규모에 이를 때까지는 증거담보의 제공 없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한도로서,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 영업속성, 재무상황, 은행과의 거래현황 등을 심사하여고객에게 부여합니다.
- ③ “증거담보”라 함은 고객의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이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 제 4 조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 ① 은행과 고객은 고객의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를           원(또는미화           불)으로약정합니다.
- ② 고객은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이내에서만 은행과 신규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며,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이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의 청산 또는 반대거래를 제외한 새로운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영업속성, 재무상황, 은행과의 거래현황 등을 최소 연 1회 이상 심사하며, 제 1항에서 부여된 손실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은행이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는 날부터, 손실한도를 감액하거나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감액통지서’를 통지하는 날부터 30 일이 경과하는 날에 새로운 손실한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④ 은행은 손실한도 준수여부의 적절한 확인을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고객과 체결한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평가하며, 평가는 평가시점에 은행이 인정하는 관련 시장에서 고시되는 금리, 환율 등 적절한 가격을 이용하고, 만약 관련 시장에서 가격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가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경우 은행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에 의합니다.
- ⑤ 본 약정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개별 파생상품 거래의 리스크관리, 거래의 적합성, 법률상 제약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증거담보의 제공)

- ① 고객의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이 제 4 조 제 1 항에서 정한 손실한도(이미 증거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담보의 평가액과 손실한도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손실한도초과금액”이라한다)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고객에게 증거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손실한도 초과 금액에 상응하는 증거담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제 4 조제 3 항에 의하여 손실한도가 감액 또는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이 손실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고객은 제 1 항에 따라 증거담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증거담보의 종류는 원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또는 기타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물이며, 해당 담보물의 평가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④ 제 1 항에 의하여 증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담보의 종류에 따라 은행의 표준적인 양식과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에 의하여 근질권계약서, 기타 유사한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 ⑤ 제 1 항에 의하여 제공하는 증거담보는 질권, 유치권, 가압류, 압류, 매매 또는 양도의 예약 기타 어떠한 종류의 담보권이나 제한(이하 “담보권”)도 설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⑥ 고객은 제 3 항에서 정한 적격담보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증거담보의 교체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증거담보의 교체를 요청받은 경우, 은행은 요청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교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며, 교체가 승인되는 경우, 기존의 증거담보가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교체하고자 하는 증거담보를 실제 제공한 날의 익영업일에, 기타 은행이 인정하는 증거담보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교체하고자 하는 증거담보를 실제 제공한 날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에 기존의 증거담보를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 6 조 (약정종료 관련 특약)**

- ① 제 5 조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증거담보의 제공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일까지 증거담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손실한도 초과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과의 파생상품거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종료시에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과 체결한 모든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반대매매를 실시하고, 반대매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객은 일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③ 거래종료 및 반대매매에 따라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손실금액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며, 고객은 해당 손실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통지받은 날까지는 3 개월 CD 평균금리를, 통지받은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은행이 고객과 동일한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고객에게 적용하는 무담보 일반여신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통지받은 손실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증거담보의처분)**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발생 사유 또는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여 거래가 종료되거나 본 약정서 제 6 조 제 1 항에 의하여 거래가 종료되어 고객이 최종 정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은행은 증거담보를 임의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고객의 최종 정산잔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증거담보의반환)**

고객이 본약정서 및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모든 거래가 종료되고,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은행은 즉시 증거담보를 반환합니다. 또한, 은행이 산정한 증거담보의 평가액이 고객의 손실한도 초과금액을 5 영업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반환하며, 증거담보가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인 경우 고객의 요청이 은행에 도달한 날의 익영업일까지, 기타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인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에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분쟁의해결)**

- ① 본 약정서의 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제공하는 제 4 조 제 4 항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의 평가금액 및 제 5 조 제 3 항에 의한 증거담보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고객은 해당 평가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은행은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거래 또는 증거담보를 재평가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 2 항에 의한 재평가금액에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과 은행은 상호협의 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이 평가기관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하기로 동의하며, 비용은 상호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제 10 조 (준거법)**

- ① 본 약정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 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 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고객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1 조 (기타)**

- ① 통지방식은 우편 외에 팩스, 이메일에 의한 통지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②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계약서를 따르며, 본 약정서와 기본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이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년	월	일	
(고객)				(주식회사하나은행)
주 소:				주 소:
상 호:	(인)			상 호: